



해외여행객 및 축산관계자 준수사항

“여러분의 신고가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국내 유입을 막아줍니다!”

| 홍보부 |

해외여행자 공항만 입국 신고 및 소독 안내

☎ 1588-9060

해외여행자는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가(아래 국가목록 참조)를 체류·경유하여 입국시 해당 국가의 축산농가 또는 축산시장을 방문한 경우 “여행자 세관 신고서” 해당항목에 기재하시기 바라며, 2011년 7월 25일부터는 공항 또는 항구에 주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입국자 동물검역 신고서”를 작성하고, 검역관의 소독, 검사 등 조치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축산관계자 공항만 출입국 신고 및 소독 안내

☎ 1588-9060

축산관계자는 2011년 7월 25일부터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가(아래 국가목록 참조)로 출국하는 경우 공항 또는 항구에 주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출국신고서를 작성하시거나, 출국 전에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 “축산관계자 출국 신고시스템”에서 출국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국가를 체류·경유하여 입국할 때에는 공항 또는 항구에 주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입국자 동물검역 신고서”를 작성하고, 검역관의 소독, 검사 등 조치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축산관계자의 범위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가족 소, 산양, 면양, 돼지, 닭, 사슴,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를 사육하는 자	사료를 판매하는 자 사료제조업을 등록한 소유자 및 판매업자와 고용된 자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가족 고용계약 체결 유·무와 상관없이 가축의 소유자등 에게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	가축방역사 가축방역사로 위촉을 받은 자
수의사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는 자
가축인공수정사 가축인공수정사 면허를 받은 자	가축시장의 종사자 축산업협동조합이 개설·관리하는 가축시장의 종사자
동물약품을 판매하는 자 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제조업자, 동물용의약품수입 판매업자, 동물용의약품도매상 소유자와 고용된 자	원유를 수집·운반하는 자

※ 동거가족 :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자(사실상 거소를 함께 하는 가족 포함)

발생국 여행자 및 축산관계자 유의사항

-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가를 여행한 경우에는 축산농가, 가축시장 등 방문을 금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귀국한 후에는 5일간 가축 사육시설 출입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여행 중에 입었던 옷 등은 바로 세탁하여 주시고, 샤워 등 개인위생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여행지에서 판매하는 육류, 햄, 소시지 등 축산물을 가져오지 마시고, 부득이 가져온 경우에는 도착
공항 및 항구에 주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국가

고병원성조류 인플루엔자 (22개국)	아시아 (16개국)	네팔, 대만, 라오스, 미얀마, 방글라데시, 부탄, 북한, 베트남, 이란, 이스라엘,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캄보디아, 홍콩 Nepal, Chinese Taipei, Laos, Myanmar, Bangladesh, Bhutan, Korea(Dem. People's Republic), Vietnam, Iran, Israel, India, Indonesia, Japan, China(People's Rep. of), Cambodia, Hong Kong
	아프리카 (3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집트, 리비아 South Africa, Egypt, Libya
	유럽 (1개국)	이탈리아 Italy
	아메리카 (1개국)	멕시코 Mexico
	오세아니아 (1개국)	호주 Australia

※ 출처 : OIE(세계동물보건기구)